

III.

법제처의 심사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¹⁵⁾ 따라서 법령안이 심사의뢰 되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또는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안을 반려하게 된다. 다만,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 중요정책의 적기시행을 위한 경우 등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나.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처리절차

법령안의 형식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1) 법률안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정)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2) 대통령령안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¹⁶⁾(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15)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의뢰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 심사의뢰 공문내용과 첨부파일이 전송된다. 이때, 법령안 심사가 접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16)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3) 총리령안¹⁷⁾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국무총리 결재(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공포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4) 부령안¹⁸⁾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5) 조약안¹⁹⁾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통보(외교부)

6) 대통령훈령안²⁰⁾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훈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대통령 재가(훈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훈령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발령(훈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7) 국무총리 소속 기관(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부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바, 법제처가 부여한 공포번호와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에 관보등록신청을 한다.
- 18)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부령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에 관보등록신청을 한다.
- 19) 조약안의 경우 법제처는 국회 동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절차(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재가, 국회 제출, 공포)는 외교부가 진행한다.
- 20) 대통령훈령과 총리훈령은 법령은 아니지만, 심사절차는 유사하므로 여기에서 설명한다.

7) 총리훈령안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훈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국무총리 결재(훈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훈령번호 부여(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발령(훈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02 법령안의 반려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심사의뢰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에 대하여 그 요건을 검토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4항).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필수적인 입법절차(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또는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법령안·조약안이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안을 심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심사의뢰한 기관과의 협의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조약안,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조약안과 그 밖에 입법추진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조약안 등은 심사의뢰한 기관과 협의하여 반려할 수 있다.

법령안 반려 세부사유(예시)

- ▶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과 명백히 중복되는 경우
- ▶ 1차 심사 결과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곤란 등을 이유로 10일 이상 불응한 경우
- ▶ 1차 심사 후 보완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불응한 경우
- ▶ 입법일정 수요 등의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의뢰 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법령안의 반려 결재권자

- 소관부처의 요구, 법리상 곤란 : 법제국장
- 절차 위반 등 : 법제(심의)관

03 법령안의 철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한 후 정책 변경 등으로 심사의뢰한 법령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접수대기 또는 심사 중이거나 심사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철회할 수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을 철회하려는 경우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법령안 철회 요청을 하고,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연계 기능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철회 요청을 받은 법제(심의)관실 담당자는 법령안 철회가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2가지 경로를 통해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철회 요청은 이루어졌으나, 정부입법시스템의 철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철회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안을 반려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제처 심사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법령안을 심사의뢰하려는 경우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한 철회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법령안이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로 정부입법시스템에 존재하므로 철회 예정 법령안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잘못 전송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시스템상의 철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제명의 새로운 법령안을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해서는 안 되며, 법제(심의)관실 담당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정부입법시스템상의 철회가 완료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명의 새로운 법령안을 접수받으면 안 된다.

또한, 법제(심의)관실 담당자는 정부입법시스템에 심사결재가 완료되어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인 법령안 중에 철회가 예정된 법령안이 있음을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함으로써 철회 예정 법령안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잘못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안 철회시 유의사항

-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2가지 경로 모두 철회 실시
-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의 연계 기능을 활용하여 일괄 처리
-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한 철회 완료 전 동일 제명의 법령안 중복 접수 금지
-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한 철회 지연 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철회 공문에 근거하여 반려 처리
- 법제처 심사결재 완료된 법령안 철회 시 법제정책총괄과와 정보 공유
- 법령안 철회 후 동일 제명의 새로운 법령안 처리하는 경우 차관회의의 안전 상정 후 법령안 주관기관 및 법제(심의)관실 상정안전 확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각 법제국에 자동접수가 된다. 법령안에 대한 심사의뢰는 각부 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실무적으로는 각 부처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안을 실제로 주관하는 법령안 주관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차관·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제안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정되므로 심사의뢰자가 곧 차관·국무회의 제안관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²¹⁾

법령안을 접수할 때에 각 법제국의 접수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법령심사가 의뢰 되었으나 제·개정문 등이 법령안편집기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안 심사 시에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령안의 제·개정문 등이 법령안편집기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법제국의 접수 담당자는 심사의뢰된 법령안이 공동소관 법률·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관 부처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다른 공동소관 부처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법령안이 심사의뢰된 법령안과 비슷한 시기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령안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을 공동소관 부처에 권고하고 부처 상호 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의 경우 공동소관 부처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할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병합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의뢰된 법령안이 공동소관 부령인 경우에는 어느 한 부처에만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21)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실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므로, 법령안의 심사의뢰는 경찰청장이 하지만, 차관·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제안관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심사의뢰를 해야 하므로 다른 공동소관 부처에서 심사의뢰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령안 접수 시 확인 사항

-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률의 개정안 국회 계류 여부(중복법안 여부)
-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공문 사본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사항 통지 결과 공문 사본(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만 해당)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 비용추계서
 - 「국회법」 제79조의2제4항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령안(미첨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실무사례

접수법안과 국회 계류법안의 중복 여부 확인 절차

1. 법안 접수 시 같은 법률의 국회 계류 여부 확인: 소관부처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2. 계류법안이 있는 경우 접수법안과 계류법안의 중복 여부 판단
3. 접수법안이 중복법안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
4. 법제(심의)관실에서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정책총괄과와 함께 법안 처리 방향 논의 (필요 시 국회 의안과와 사전 협의)
 - 입법기술상 중복 회피, 법안 반려, 계류법안의 철회안 또는 수정안 제출 등 법안 처리 방향 논의
5. 법안의 국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심의)관실은 법제처의 입장을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소관부처의 최종 방침 결정 요청

의안검색

청원검색

기본검색

문서검색

기능형검색

문서검색 ① 결과내 검색

의안명(대표발의자)

발의자 ① 대표발 의안명 동경이인 소관위원회

제안대수 제22대 ~ 제22대 대수정보 의안종류 ①

원전일지검색 ①

III

법제처의 심사

전체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의안명 (0) 의안원문 (4) 검토보고서 (11) 심사보고서 (0) 체계지구검토보고서 (0) 기타문서 (0)

전체 3건 (1/1 페이지) 10 적용 정렬순서 관련도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제안 이유	심사진행상태
제안이유	22043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형의원 등 19인)	의원	2024-09-26		소관위접수	
<p>...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대역사업자에게 조차할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함(안 제2조제19호의2). 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역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제55조의2제1항 등). 다. 대역사업자는 대역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2항).</p>							
제안이유	22154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권의원 등 15인)	의원	2025-12-19		외부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타날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임·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임·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부설주차장의 임·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임·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p>							
제안이유	22019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의원	2024-07-18		소관위접수	
<p>...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상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p>							

1. 중복법안의 의미

- 1) 국회 계류 중인 정부제출법안(A법안)에서 개정하는 조문과 같은 조문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A'법안)
 - 같은 법률인 경우에도 각각 다른 조문을 개정한다면 별개의 법안(B법안)이므로 중복법안에 해당 안 됨.
 - 원칙적으로 중복 여부는 “조” 단위로 판단하나, 내용상 분리된다면 항·호 단위로도 판단 가능
 - A법안과 A'법안 중 어느 하나라도 전부개정이면 중복에 해당

- 2) 국회 계류 중인 법안(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모두 포함)과 내용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 내용상 중복여부, 독자적인 내용인지 여부는 개정취지, 조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하여 결정함.

※ 이하에서는 1)에 해당하는 중복법안에 대해 설명함

2. 중복법안 판단 기준

- 1) 중복법안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개정하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²²⁾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 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 시험을 제외한다)은 <u>운전면허시험기관</u> 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u>도로교통공단</u>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u>교통안전공단</u> ----- ----

- ② 개정하는 부분이 포함된 조·항 전체를 삭제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은 <u>운전면허시험기관</u> 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u>도로교통공단</u>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삭 제〉

③ 개정하는 부분이 포함된 조·항 전체를 개정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u>도로교통공단</u>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연습면허시험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삭제하는 조·항의 내용을 개정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⑦위원회에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삭 제〉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

2) 중복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독립된 항·호를 신설하거나 단순히 항·호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같은 조·항이더라도 개정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 <u>도로교통공단</u>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 ----- ----- -----.

③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의 경우(순수알법, 내용알법 중 내용개정 없는 부분²³⁾)

- 삭제된 항을 개정하므로 중복[위 1)④ 해당]이지만, 계류법안 또는 제출예정법안이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이면 중복이 아닌 것으로 취급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삭 제〉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④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에 준하는 정비

명목상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은 아니나 알기 쉽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법률안이나 특별자치도 정비 등 내용 개정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이 아닌 것으로 취급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도·특별자치도 ----- -----.	〈삭 제〉

3. 중복법안의 처리

국회는 중복법안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하므로, 입안하려는 법안(A'법안)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처리해야 함.

- 계류 중인 A법안의 처리(국회의결) 후 국회 제출
- 계류 중인 A법안을 철회하고 A'법안 제출(철회안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p.80 이하 참조)
- 계류 중인 A법안의 수정안 제출

- 22) 2014. 6. 11.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가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가안전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내용이 국회 계류 중이었고, 그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어 중복법안 여부를 국회 의안과와 협의한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개정된 점과 「정부조직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중복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4. 11. 5.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있다.
- 23) 내용 개정 없이 알기 쉽게만 정비한 법률안을 순수알법이라고 하며, 내용개정과 함께 법률 전체를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을 내용알법이라고 한다.

가. 합의심사제

법제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심사제²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동심사회와 법제합의부로 구분하고 있다.

1) 합동심사회

가) 구성원 등

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심의)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 입안·심사 기준 담당 실무자, 법령안 심사에 관하여 법제(심의)관을 보좌하는 서기관·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합동심사회는 주 1회(통상 수요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상정대상 안건

모든 법률안은 합동심사회 상정을 원칙으로 하고, 하위법령안은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있는 경우,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심의)관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경우 등에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적 입법 예고 중인 안건을 상정하여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회의계획 작성

주심 법제(심의)관과 실무자는 심사 중인 법령안을 합동심사회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정책총괄과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각 법제(심의)관실로부터 상정 의뢰된 안건에 관한 회의계획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차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계획을 처 내에 공지한다.

24) 법령안 합의심사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법제처예규 제72호)을 참고한다.

라) 법령안 및 주요심사사항 등의 제출

주심 법제(심의)관은 합동심사회에 상정할 법령안(부처제출안을 원칙으로 한다.) 파일을 회의 개최 전 주 금요일까지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해야 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제출받은 파일을 정리하여 처 내에 미리 공유함으로써 회의 참석 전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법리적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

법령안 합동심사회는 차장이 주재하고, 각 국장, 법제(심의)관 및 관련 서기관·사무관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중 토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심 법제(심의)관이 주요 심사사항 발표 후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그 후에 그 밖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지적 및 토론 순으로 합동심사회를 진행한다.

합동심사회는 모든 쟁점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공유하고, 담당법제(심의)관의 심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각 법제(심의)관은 해당 안전에 자기가 담당하는 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언급하여 심사안이 종전 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령을 먼저 담당했던 법제(심의)관이 종전의 심사 시 경험에 대하여 발언함으로써 해당 법제(심의)관의 심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합동심사회에 부처 원안을 상정함에 따른 체계·자구 등의 문제점은 주심 법제(심의)관에게 일임하여, 합동심사회가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바) 입안 심사 기준 및 법제 지식 등의 보고

합동심사회에서는 입안 심사 기준이나 법령안 개정문 형식 등 각 법제국에 의견을 구할 사항과 최근 법령해석사례 등 법제 분야의 새로운 지식 등을 보고할 수 있다. 합동심사회는 법제심사의 쟁점 사항에 대한 법제국의 합의기능과 법제지식 등의 공유를 통한 법제심사 역량강화 기능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2) 법제합의부

가) 구성 등

법제합의부는 법제국 단위로 법제국장과 법제(심의)관으로 구성하며, 법제(심의)관을 보좌하는 서기관·사무관, 그 밖의 직원은 배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제합의부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법제합의부의 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상정 안전

법제합의부는 합동심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심의)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다) 법령안 등의 제출

주심 법제(심의)관과 실무자는 법령안 심사 시에 해당 안전을 법제합의부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입법시스템의 회의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법제합의부에 안전을 상정한다.

해당 법제국 법제합의부 담당자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 심사]법령안 심사회의회합] 메뉴에서 회의를 개설하고, 국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계획을 주심 법제(심의)관에게 통보한다.

라) 주요심사사항 등의 등록

주심 법제(심의)관은 해당 법령안과 주요심사사항, 토론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정부입법시스템에 개설된 회의방에 등록하고, 법제국 법제합의부 회의담당자는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합동심사회 보고 사항

법제합의부의 회의 결과 합의는 되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심의)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심의)관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합의법제관

법제(심의)관은 법령안 심사보고 시 특정 업무 분야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법제관(이하 “합의법제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령심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합의법제관의 의견은 소관 법제국장의 검토 전에 받도록 한다.

합의법제관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합의법제관 지정 기준

관련 사항	합의법제관
- 국가행정조직 및 국가공무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조직) 담당 법제관 - 인사혁신처(인사) 담당 법제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지방행정) 담당 법제심의관
-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담당 법제심의관
-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국토) 담당 법제심의관
- 조약	- 그 내용별로 위의 각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관

나. 법제관실의 법령심사 및 심사안의 작성

1) 법령안

법령안의 접수가 끝나면 담당 법제(심의)관 및 서기관·사무관 등이 팀을 이루어 법령을 심사하게 된다. 법령안 심사 시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정책적인 설명을 듣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안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령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법령안이 합동심사회나 법제합의부의 대상인 경우 또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심사회 또는 법제합의부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재입법예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법령안의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안을 작성한다. 심사안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이 되고,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경우에는 부처 송부안이 된다.

국무회의 상정안은 표지, 의결서 부분과 법령안으로 구성되며, 부처 송부안에는 표지가 없고, 의결서 부분 대신에 의결주문이 빠진 제정·개정 이유 부분이 들어간다.

비밀문서로 분류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인 보안나라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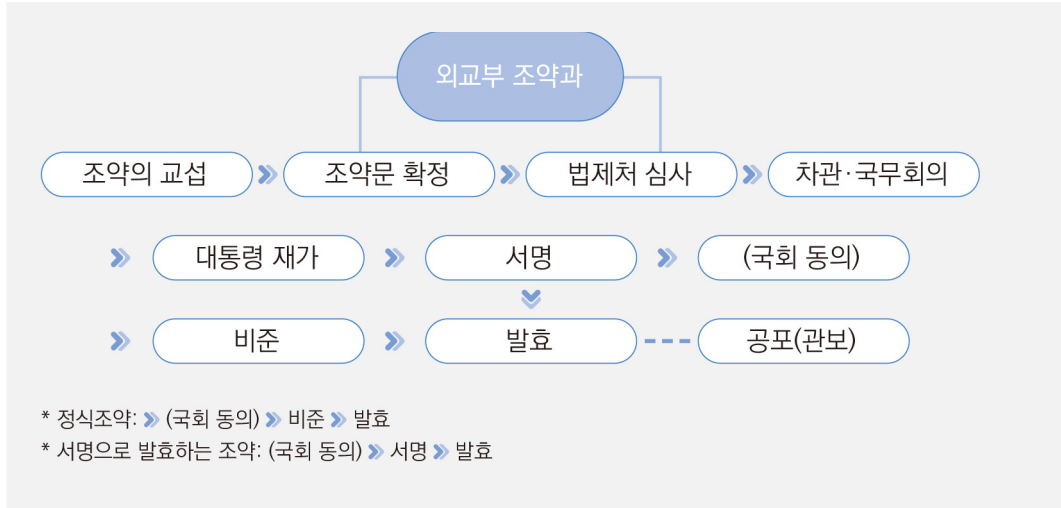
법령심사안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조약안

조약안은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조약안의 주요 내용, 검토사항 및 검토 의견을 적은 국회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붙임 제3호서식)를 첨부한다. 조약안의 검토의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²⁵⁾를 명시해야 한다.

25)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우호통상 항해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강화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 요청

심사안 작성이 끝나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 법령용어순화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요청하여 검토를 거친 후 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요청할 때 주의할 점은 법령 심사안의 담당자는 법제(심의)관이고 실무자(서기관·사무관 또는 주무관)는 보조자이므로, 반드시 담당 법제(심의)관의 검토가 끝난 법령심사안을 검토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를 요청한 심사안에 대하여 법령용어순화팀에서 권고안을 등록하면 실무자는 법제(심의)관과 함께 권고안을 심사안에 반영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106 법령심사안의 결재

가. 결재(결재 관련 양식은 붙임 제4호서식 참조)

법률안·대통령령안 및 조약안의 심사안은 처장의 결재를 받고,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 및 총리훈령안의 심사안은 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총리령안 등의 심사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처장 또는 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심사안의 결재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나. 심사경과보고

담당 법제(심의)관은 법령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접수안에서 수정 또는 삭제한 사항 중 결재 시 참고자료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경과보고서(붙임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